

인터넷 FX 딜링거래 약정서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8.02.01(목)

2. 개정 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14조 (계약 불이행 등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은행은 통지로서 본인과 체결한 모든 또는 일부 거래의 해지, 채무이행의 거부, 거래한도의 감축, 거래주문의 접수 거절 등 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'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' 또는 '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' 제7조 제1항 내지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</p> <p>2. <u>본인이 이 약정서에 따른 채무 또는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</u></p>	<p>제14조 (계약 불이행 등)</p> <p>① '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' 또는 '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' 제7조 제1항 내지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은행은 통지로서 본인과 체결한 모든 또는 일부 거래의 해지, 채무이행의 거부, 거래한도의 감축, 거래주문의 접수 거절 등 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</p>	<p>①항 1 호 내용 통합</p> <p>2 호 삭제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